

2007. 3. 23.(금)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6.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7. 3. 6.
다. 상정일자 : 2007. 3. 12.(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가. 제안사유

-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조항 삭제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사항 보완
-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상호경쟁 유발을 통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도모

나. 주요내용

- 명예반장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반상회 운영사항 보완(안 제8조)
- 반상회 운영평가 보완(안 제9조)
- 이·통·반장 편의 제공 조항 신설(안 제 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의 각종 시책과 정보에 관한 홍보와 주민의 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되고 있는 반상회 운영, 명예반장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2007. 3. 6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입니다.

○ 안 제7조는 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명예
반장제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8조 내지 9조는 반상회 운영사항 및
평가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통·반장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금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비안이며,

○ 침체된 반상회 운영을 이·통·반회의로 확대 운영하여 본래의 운영 취지를
극대화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수운영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고 한바,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
조성을 위해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해 등”에 관하여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 의료비
등으로 구체적인 보상범위가 설정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천시 이통장 총 445명에
대하여 1인당 보험료 37,627원을 적용할때 총 보험료 지급액은 16,744,015원이며
(기예산 확보), 2007. 2월말 현재 제천시 전체 1,978개반 반장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 1,978명 X 37,627원 = 74,42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하부조직관리(이·통·반장)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로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해야겠으며, 보상관계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일 등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안 제13조(편의제공)는 조례내용상 “편의제공”은 물품이나 시설 부담을 지원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어구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상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통장에 대한 보험료만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반장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박성하 의원)
- 업무중이란 365일 상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양순경 의원)
- 금번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범위 안에서 각종 상해에 대한 보상관계로 법적인 쟁송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박기석의원)
- 예산의 범위내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권건중 의원)
- 금번 개정조례안 중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장의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를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반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 의견은 어떠신지?(강현삼 간사)

나. 답변요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그렇습니다.
- 예,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만 점차 확대 추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현재 이통장은 보험적용료가 37,627원 정도로 약 16,744,015원, 반장의 1,978명에 37,627원을 적용하면 74,426,206원 정도가 됩니다.

5. 소수의견

“상해보험 가입대상에 대하여 토론 여지가 있음”

6. 토론요지

“본조 제13조 내용은 이·통·장이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 내용을 전체 보상하는 포괄적 내용이므로 향후 조례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한 보상한계가 정해진 문구로 수정함이 타당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자치행정위원 총 수 6명 중 6명 모두 찬성)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동의 발의서명서 각 1부. 끝.

2007. 3. 12(월) 14:00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3. 12.

제 안 자 : 강현삼 위원

1. 수정이유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내용중 이·통·반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내용에 관한 보상범위가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따른 보상지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한계를 정하고, 현실적으로 반장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이·통장에 한하여 보상지급 대상자로 정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복무수행을 도모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반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를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함.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3. 12.

제 안 자 : 강현삼 위원

1. 수정이유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내용중 이·통·반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내용에 관한 보상범위가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따른 보상지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한계를 정하고, 현실적으로 반장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이·통장에 한하여 보상지급 대상자로 정하여 사기진작 및 안정적 복무수행을 도모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편의제공) 내용 중
 - "이·통·반장"을 "이·통장"으로,
 - "입은 상해 등"을 "발생하는 사고"로,
 - "보상"을 "단체보험에 가입"으로 수정함.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반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이·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용수	李龍洙	위원장
장현상	장현상	간사
백성화	백성화	
양순경	양순경	
박기석	박기석	
김기홍	김기홍	